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17
----------	-------

발의연월일 : 2025. 9. 24.

발 의 자 : 박균택 · 권철승 · 이건태
박상혁 · 김기표 · 맹성규
박지혜 · 정진욱 · 황명선
정준호 · 박홍배 · 한민수
한준호 · 김승원 · 박해철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11%에 불과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위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과태료 납부를 장기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함.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규정하여 체납자

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① 기획재정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체납 내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 불능 상황이 명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고액·상습과태료체납자명단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기획재정부장은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자임을 통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3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체납내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u> <u>1. 제32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u> <u>2. 과태료 납부 불능 상황이 명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u> <u>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기</u>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고액·상
습과태료채납자명단공개심의위
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채납
자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통지
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채납
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채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
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에 게재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
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
른 채납자 명단공개 및 심의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